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0나869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김좌진, 백재승, 이치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윤기, 김대호, 이해진, 윤희상

변 론 종 결 2022. 6. 10.

판 결 선 고 2022. 7. 8.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19가소18150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769,17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수급한 C공사를 D(E)에게 하도급하였고, 위 D(E)은 2018. 4. 10.경 위 공사를 피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이하 피고가 재하수급한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9. 5.경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는데, 피고의 공사기간 동안 원고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는바,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는 2018. 4. 5.부터 2019. 4. 4.까지 총 303,083,182원이다.

다. 피고가 2019. 10.경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원고가 정산하여 보니, 피고의 기성고는 전체 공사의 70% 정도로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280,314,007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2,769,175원(= 303,083,182원 - 위 280,314,007원)을 초과 지급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769,175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갑 제1호증은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의 서명, 날인 등이 전혀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는바, 피고와 D(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처분문서는 작성된 바 없으나, 다만, 총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원고와 D(E) 사이에 체결한 계약금액의 85%로 정한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D(E) 내지 원고와 사이에 어떠한 방법으로 기성고를 정산하거나 기성대금 지급시기를 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 등의 증거는 없고, 다만, 피고가 중간중간에 기성고 대금을 요청하면 원고가 2018. 4. 5.부터 2019. 4. 4.까지 12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갑 제3호증 및 원고의 주장).

그런데, 원고는 마지막 공사대금 지급일인 2019. 4. 4.로부터 6개월이나 지난 2019. 10. 28.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요청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정산을 해보니 피고의 2019. 4. 4.까지의 기성고가 70%라거나 피고가 기성대금 수취 당시 교묘하게 원고를 속여 80,000,000원을 이중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 2019. 10.경에는 D의 실질적 운영자 F가 직접 공사를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서야 피고의 기성고를 70%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고, 갑 제4, 6, 7, 10, 15, 1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G, H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기성고 내지 기성대금 산정방법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구나 원고의 기성고 계산 방식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총 공사금액을 정하지 않은 채 원고와 D(E) 사이에 정한 금액의 85%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D의 공사금액이 (원고 수급금액의) 64.2%에 해당하는 570,000,000원이라고 하면서도 피고의 기성고는 280,314,007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후 D의 공사금액을 468,861,702원(= 원고의 공급가액 730,314,178원 × 64.2%, 원 미만은 계산상 버림, 이하 같다)으로 변경하여 피고의 기성고를 278,972,712원(= 위 468,861,702원 × 85% × 70%), 부가가치세 포함 306,869,983원이라고 주장하고(2020. 7. 13.자 준비서면), 다시 원고 본인이 수급한 총 공사비 1,150,944,410원 중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계액 730,665,313원만을 기준으로 D(E)과 사이에 정한 금액은 위 금액의 64.2%에 해당하는 469,087,130원이고, 따라서 피고가 받을 공사대금 총액을 위 금액의 85%에 해당하는 398,724,061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성고로 계산하는 등 이 사건 총 공사금액과 그에 따른 기성고 계산 방법에 관하여 여러 차례 주장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 스스로도 총 공사금액 주장에 변경이 있었던 점이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통하여 비로소 원고와 D 사이에 정한 공사금액을 밝히고자 사실조회신청 등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받을 정확한 공사금액은 피고가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도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의 위와 같은 계산방식은 총 공사금액에 대한 독자적인 주장에 근거한 것이고, 원고가 기성대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기성고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 아님은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도 분명하다.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철, 판사 송주희, 판사 박애경